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조금에서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 및 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 교육 실시〉

■ 하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523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조금에서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안 제27조의3 신설)	2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관리 교육 실시 (안 제27조의4 신설)	5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하태경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3. 11. 17.

다. 회 부 일 : 2023.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조금에서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지출한 감사인 선임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

현행법은 같은 회계연도 중 총액 10억원 이상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¹⁾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자체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자체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위하여 지출한 감사인 선임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감사인 선임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의 경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회계감사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정산관리의 주체는 보조사업자로,³⁾ 보조사업자가 감사인 선임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부처승인을 얻어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하도록 예산집행지침에 기규정하였다는 입장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p.108.)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7조의3(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u> <u>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u> <u>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u> <u>자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u> <u>고서의 제출을 위하여 지출한 감사</u> <u>인 선임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u> <u>에서 지출할 수 있다.</u>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관리 교육 실시 (안 제2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현행법은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⁴⁾

기획재정부장관은 현행법(제26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및 e나라도움 교육관리시스템⁵⁾을 운영 중임.⁶⁾

-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5) <https://cyber.gosims.go.kr>, 교육과정은 사용자별(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 지자체공무원, 중앙관서공무원)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강의, 정기교육, 특별교육, 맞춤형교육을 제공함.
-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나라도움 교육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교육 과정]

대상	과정명	주요내용
보조사업자	신청·교부과정	사용자등록 및 사업유형별 업무흐름의 이해(사업신청, 등록, 교부신청)
	집행과정	전사(세금)계산서 및 보조금전용카드 등록, 집행정보 등록 및 집행요청
	정산과정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등록, 상시점검 및 정산관리, 정보공시 등의 업무
	집행·정산과정(응용)	집행등록·취소, 상시점검·정산관리, 반납관리·정보공시 사례 실습
	계약·중요재산과정	계약 개요 흐름(계약 요청 및 체결), 선금지급, 계약 검사, 대금 지급 처리
	정산·이월과정	상시점검 및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등록, 정산관리 및 이월신청 등의 업무
	비에치집행과정	업무대행자, 비에치형 사업에 대한 업무 흐름 및 보조금전용카드, 집행정보 등록 관리
	비에치정산과정	업무대행자, 비에치형 사업에 대한 정산 업무 흐름 및 상시점검 정산보고서, 반납 관리
상위 보조사업자	공모·교부과정	공모등록 및 자격검증,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관리, 기타 사업별 관리
	정산과정	정산개요 및 업무 흐름(상시점검), 반납 절차 및 부정수급, 정보공시
	부정수급관리	부정수급 관리개념 및 법령, 단계별 검증 관리 안내 및 부정수급 사례
지자체 공무원	공모·교부과정	공모등록 및 자격검증,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관리, 기타 사업별 관리
	정산과정	정산개요 및 업무흐름(상시점검), 반납 절차 및 부정수급, 정보공시
	정산·이월과정	부정수급 관리개념 및 법령, 단계별 검증 관리 안내 및 부정수급 사례
중앙관서 공무원	공모·교부과정	보조사업담당자 관리, 내역사업 등록 및 보조사업 관리, 교부 및 중요재산 관리
	정산·부정수급과정	상시점검 및 이월점검, 정산관리 및 반납, 수납, 정보공시 및 부정수급 관리
	수행배제과정	수행배제 법령, 부정수급업무 및 보조사업자 업무 시스템 활용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24. 2.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조사업자의 회계 실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및 보조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현재 e나라도움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 지자체공무원, 중앙관서공무원 등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39조의3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 중이라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4(회계 관리 교육)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계 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문의처

02)6788-5152